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0가단50927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변원갑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9년 5월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최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04. 12. 21.경 F 주식회사(이하 ‘F저축은행’이라 한다)에 D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던 대출금채권(원금 7,298,826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F저축은행은 2011. 6. 15.경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마찬가지로 그 무렵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F저축은행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692090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D는 F저축은행에 16,207,378원 및 그 중 7,298,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0. 4. 27. 확정되었고, F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 2. 4. 위 승소판결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로 같은 법원에 2020차전13475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청취지 그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20. 2. 28. 확정되었다.

다. D는 형제자매로 피고, G, H, I, J가 있고, 아버지로 K, 어머니로 L(K의 배우자)이 있는데, K가 1996. 8. 15. 사망함에 따라 L 및 D와 피고 등 형제자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망 K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다만, L은 후술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있기 전인 2019. 2.경 사망하였다).

라. D와 피고를 포함한 형제자매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2019. 5.경1) “망 K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2)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등기부상으로는 1996. 8.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원인으로 2019.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인 2019. 7. 5. M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건물3) 을 합계 9,500만 원에 매도하여 M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무렵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는, D가 망 K의 사망 이후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바람에 원고와 같은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위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1996. 8. 15.에 있던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협의가 2019. 5.경에 있던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3. 30.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시점인 2022. 8. 9.은 이미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결국 부적법하고(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가 적법하더라도 피고에게 사해행위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9. 5.경에 있었다고 보이고(다만, K의 사망일을 등기부상 원인일자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에 행해진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은 모두 이 사건 소제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사해행위로 특정하되, 다만 그 대상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므로 제척기간의 도과여부는 이 사건 소제기일을 당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2019. 5.경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더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고 그 협약이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더해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무자력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와 피고를 포함한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기 전에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자인 D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상속분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무자력을 심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자신의 행위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망 L의 치료비, 간병비 등을 다액 부담하여 이를 전보하고자 D와 나머지 형제자매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분인 1/6 지분에 관하여는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M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가액반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 중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에 가까운 시기의 거래가액 또는 개별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가액반환의 범위는 11,433,333원{= (거래가액 9,500만 원 - 이 사건 부동산 외 그 지상건물의 2022년 개별주택가액 2,640만 원) × 1/6,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이 되므로,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984만 원 전액을 원상회복의 범위로서 인용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가액반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9,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별 지 목 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전 61m²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 453m²

1) 원고는 2019. 5. 21.을 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 특정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2019. 5.경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을 크게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을 제1호증의 작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인 2019. 5. 29. 이전 무렵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시기를 2019. 5.경으로 특정한다.

2) 상속재산 중 경북 포항시 남구 N 전 879㎡에 관하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2019. 6. 28. 위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을 제1호증 참조).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 의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 의는 모두 망 K에 대한 상속재산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망 K의 배우자인 L이 사망한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L이 상속받았던 망 K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망 L으로부터 D나 피고 등이 상속받은 지분까지 고려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기로 한다.

3) 제출된 자료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인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에 의할 때, 그 건물의 가액은 26,400,000원이다.